

## 자산보관 •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조산을  
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 
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 
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 
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 
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피델리티인디아증권  
자투자신탁 (주식)

나. 집합투자기구분류: 증권[주식형]

집합투자기구

다. 보관 •관리기간: 2012.01.01 - 2012.12.31

라. 집합투자업자: 피델리티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 
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우증권, 신영증  
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  
자증권, 현대증권, 한화투자증권, 동양증권,  
NH농협증권, 골든브릿지투자증권, 삼성증권, 동  
부증권, 케이비증권, 메릴린치증권서울지점, 미  
래에셋증권, 키움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하나대투  
증권, 비오에스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우리은행,  
대구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경남은행,  
국민은행, 아이엔지생명보험, 외환은행, 삼성화  
재해상보험, 한국씨티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  
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아이엔지은행,  
현대해상화재, 메트라이프생명보험

### 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| 변경<br>일자       | 변경<br>사유 | 주요 변경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변경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2.<br>05.02 | 제2조      | ① 제 231 조의 규<br>정에 의한<br>모자형집합투자기<br>구의<br>자투자신탁으로서 | ①<삭제><br><br>② <추가><br>이 투자신탁은 (종략)<br>집합투자기구이다.    |
|                | 제26<br>조 | ①이 경우<br>(종략)<br>통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제26<br>조 | 나. 모두자신탁의<br>수익증권의<br>환매가 연기된 경<br>우                | 나. 모두자신탁이<br>투자하는<br>집합투자기구의<br>수익증권의<br>환매가 연기된 경우 |
|                | 제39<br>조 | 한국예탁결제원의<br>전산시스템에 의하<br>여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삭제) 전산시스템에<br>의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제40<br>조 | 라. 일반사무관리회<br>사보수율 :<br>최고 연 0.030 %                |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<br>보수율 :최고 연<br>0.028 %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제48<br>조 | ①서류 작성과<br>외부감사를<br>의뢰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| ①서류 및 부속서류를<br>작성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제49<br>조      | ③제 3 항의<br>(종략)<br>1 월 이상<br>게시하여야 한다. | ③<삭제>                   |
|  | 제49<br>조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<추가>제 4 항<br>(종략)아니하다. |
|  | 클래<br>스<br>신설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류 A-e 및 종류 C-e<br>추가   |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- 해당사항없음

#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- 해당사항없음

### 6. 회계감사의 선임 •해임에 관한 사항

| 회계<br>감사인명 | 계약<br>기간 | 감사<br>보수 | 계약<br>방법 | 회계<br>감사인명 | 계약<br>기간 | 감사<br>보수 | 계약<br>방법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상일<br>회계법인 | 1 년      | 209 만원   | 서면계약     | -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

\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예명기된 회계감사인  
보수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 
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

#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 
부합하는지의 여부- 부합함
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- 공정함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 
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- 적정함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약  
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 
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
- 해당사항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 
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 
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 
집합투자재산을 보관 •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 
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 
아님

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 
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- 해당사항없음

#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 
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 
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 
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 
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